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140 발의연월일: 2024. 12. 31.

발 의 자:윤준병・박용갑・박희승

정동영ㆍ허 영ㆍ허종식

서영교 • 박민규 • 문대림

김태선 · 조계원 의원

(11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및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로서 월 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있으며, 교육비 지출 시 그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세액공제에도 불구하고, 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는 직장인들은 고물가·고금리의 상황 속에서 물가 상승에 비해 실질임 금은 상대적으로 상승하지 않고 있으며, 명목임금이 상승해도 과표가 고정되어 있어 실질적으로 증세를 강제당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기본공제 기준으로 부양가족 중 자녀의 경우 20세이하로 한정하여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기준은 1974년에 마련된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된 바가 없어 50년이 지난 현재 자

녀들이 대학 진학 후 졸업 때까지 부모가 부양해야 하는 현실과 부합 하지 못하고 있는 측면이 존재함.

이에 직장인들의 자녀교육 및 보육과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조세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근로자의 비과세 대상 식사대 한도를 기존 월 20만원 이하에서 월 3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12조제3호러목).
- 나.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비과세 대상 급여 한도를 기존 월 20만원이하에서 월 3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함(안 제12조제3호머목).
- 다. 기본공제 항목에서 20세 이하 자녀를 25세 이하 자녀로 연령을 상 향하여 기본공제 기준을 현실화함(안 제50조제1항).
-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등학생의 교육비 특별세액공 제 한도를 1명당 연 500만원으로 상향하고,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를 초등학생과 음악·미술·무용 등 예능학원을 포함한 학원까지 확대함(안 제59조의4제3항제1호).

법률 제 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러목 중 "20만원 이하의"를 "3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로 하고, 같은 호 머목 중 "20만원 이내의"를 "3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한다.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제1항제3호나목 전단 중 "20세 이하(20세"를 "25세 이하(25세"로 한다.

제59조의4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300만원을"을 "500만 원을"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아동을"을 "아동 또는 초등학생을"로, "또는"을 "(음악, 미술, 무용 등 예능학원을 포함한다) 또는"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식사대 관련 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러목의 개 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지급받는 식사대부터 적용한다.

제3조(출산·보육 관련 비과세소득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호머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한다.

- 제4조(기본공제에 관한 적용례)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 률 제5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 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제5조(특별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4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 은 이 법 시행 이후 교육비를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 제12조(비과세소득) |
|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 | |
| 세하지 아니한다. | |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 | 3 |
| 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 | |
| 하는 소득 | |
| 가. ~ 더. (생 략) | 가. ~ 더. (현행과 같음) |
|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 러 |
|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 | |
| 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 |
|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 | |
| 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 |
|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 |
|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 30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
|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 | 의 |
| 머.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 머 |
|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 |
|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 | |
| 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 | |
| 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 |
|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 30만원 |

이내의 금액

버. ∼ 저. (생 략) 4. · 5. (생 략)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 정법률

제50조(기본공제) 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자연인만 해당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 1. 2. (생략)
- 3.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제51조제1항제2호의장애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다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이하인 사람(총급여액 500만원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버. ~ 저. (현행과 같음)

4. · 5. (현행과 같음) 법률 제20615호 소득세법 일부개 정법률 제50조(기본공제) ① -----1. · 2. (현행과 같음)

부양가족을 포함한다) 가. (생 략)

나.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거 입양자(이하 "입양자"라 한다)로서 20세 이 하(20세가 되는 날과 그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인 사람.이 경우 해당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모두 제51조제1항제2호에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 ~ 마. (생 략)

- ② · ③ (생 략)
-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제
 - ② (생 략)
 - ③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그 거주자와 기본공제대상자 (나이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 제3호나목의 기관에 대해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8세 미 만인 사람만 해당한다)를 위하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 | |
| <u>2</u> 5서 <u>하(25세</u> | |
| | |
| | |
| 다. ~ 마.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 |
| 59조의4(특별세액공제)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여 해당 과세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를 지급한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비는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아동(이하 이 호에서 "직계비속등"이라 한다)을 위 하여 지급한 다음 각 목의 교 육비를 합산한 금액. 다만, 대 학원에 지급하거나 직계비속 등이 제2호라목에 따른 학자 금 대출을 받아 지급하는 교 육비는 제외하며, 대학생인 경우에는 1명당 연 900만원,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 ·중·고등학생인 경우에는 1 명당 연 300만원을 한도로 한 다.

가. ~ 다. (생 략) 라.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을

| ·. |
|------------------|
| 1 |
| |
| |
| |
| |
| |
| |
| |
| |
| |
| |
| |
| |
| <u>500만원을</u> |
| 가. ~ 다. (현행과 같음) |
| 라 <u>아동</u> |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학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에 지급한교육비(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하는 비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만 해당한다)

| 또는 초등학생을 |
|------------------|
| |
| |
| |
| (으아, |
| 미술, 무용 등 예능학원을 |
| <u> 포함한다) 또는</u> |
| |
| |
| |
| |
| |

2.·3. (생략) ④ ~ ① (생략) 2.·3. (현행과 같음)④ ~ ① (현행과 같음)